

# 행 정 자 치 부

## 훈계 · 주의 요구

제 목 유압구조장비 구매 낙찰자 선정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경상남도 본청

관 련 자 경상남도 ○○○○사업소(전 ○○과) 지방○○주사보 ○○○

내 용

지방○○주사보 ○○○는 2015. 1. 12.부터 2015. 12. 23까지 경상남도 ○○과에서 근무하면서 물품계약 업무를 담당하였다.

경상남도 ○○본부(○○○○과)에서는 구조 활동에 필요한 구조장비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표 1]과 같이 국비 지원 및 지방비를 확보하여 유압구조장비 세트를 구매하였다.

[표 1] 경남 소방본부 유압구조장비 구입현황

| 구입내역      | 구입개요      |           |           |           | 도금액(천원) |         |         | 도급업자      | 입찰 및 낙찰방법 |
|-----------|-----------|-----------|-----------|-----------|---------|---------|---------|-----------|-----------|
|           | 공고일       | 적격심사일     | 계약일       | 납품일       | 계       | 국비      | 지방비     |           |           |
| 유압구조장비 세트 | '15.5.19. | '15.6.10. | '15.6.19. | '15.6.30. | 313,500 | 156,750 | 156,750 | 에코하이텍 박용일 | 제한경쟁 적격심사 |

\* 자료 : 경상남도 ○○과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9호, 2015. 4. 15.일 시행)」 제4장 ‘물품적격심사 세부규정’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물품의(별표 2)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3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경상남도 ○○본부(○○○○과)에서는 유압구조장비 구입을 위해 일반 경쟁입찰(적격심사)로 공고<sup>86)</sup>하면서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제4장 ‘물품적격심사 세부규정’에 근거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100분의 80.495이상으로 입찰한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기로 하고,

이행실적은 최근3년 이내 유압구조장비세트(추정가격 303,582,000원) 1개 품목에 동등이상 물품만 납품한 실적을 인정한다고 공고하였다.

그러나, 2015년도 유압구조장비 구입을 위한 적격심사 물품납품 이행능력을 평가하면서, 정당한 평가 시 [표 2]와 같이 납품실적이 부족하여 종합평점 85점<sup>87)</sup>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낙찰 부적격 업체에 해당함에도 세부적인 확인 없이 업체에서 제출한 물품납품 실적 증명서만을 근거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는 등 부적정하게 계약을 체결하였다.

86) 경상남도 입찰공고 제2015-000호(2015. 0. 00.일 공고)

87) 당초 종합평점 87.84로 집계되었으나 실제 정당한 평가결과 87.84-(20-12)=79.84점으로 85점에 못 미쳐 낙찰 부적격 업체임

[표 2] 유압구조장비세트 물품납품 이행능력 실적 평가 현황 (단위: 원, %)

| 구분        | 추정가격<br>(a) | 실적금액<br>(b) | 물품평가<br>비율(b/a) | 평점 | 제출실적       |             | 비고          |
|-----------|-------------|-------------|-----------------|----|------------|-------------|-------------|
|           |             |             |                 |    | 기관         | 실적          |             |
| 당초<br>평가  | 303,582,000 | 346,039,998 | 113.99          | 20 | 계          | 346,039,998 |             |
|           |             |             |                 |    | ○○소방서      | 38,854,545  |             |
|           |             |             |                 |    | ○○소방서(12년) | 40,000,000  |             |
|           |             |             |                 |    | ○○소방서      | 14,509,090  |             |
|           |             |             |                 |    | ○○소방서      | 14,150,000  |             |
|           |             |             |                 |    | ○○○○본부     | 47,490,000  |             |
|           |             |             |                 |    | ○○소방서      | 23,100,000  |             |
|           |             |             |                 |    | ○○○○본부     | 105,800,000 |             |
|           |             |             |                 |    | ○○소방서(13년) | 21,100,000  |             |
|           |             |             |                 |    | ○○소방서      | 41,036,363  |             |
| 정당한<br>평가 | 303,582,000 | 208,468,998 | 68.66           | 12 | 계          | 208,468,998 |             |
|           |             |             |                 |    | ○○소방서      | 38,854,545  |             |
|           |             |             |                 |    | ○○소방서(12년) | 0           | 3년 경과 실적    |
|           |             |             |                 |    | ○○소방서      | 14,509,090  |             |
|           |             |             |                 |    | ○○소방서      | 14,150,000  |             |
|           |             |             |                 |    | ○○○○본부     | 47,490,000  |             |
|           |             |             |                 |    | ○○소방서      | 14,329,000  | 실적 과다<br>신고 |
|           |             |             |                 |    | ○○○○본부     | 17,000,000  | 실적 과다<br>신고 |
|           |             |             |                 |    | ○○소방서(13년) | 21,100,000  |             |
|           |             |             |                 |    | ○○소방서      | 41,036,363  |             |

\* 자료 : 경상남도 ○○과 제출자료 재구성88)

## 조치할 사항 경상남도지사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행능력실적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아 부적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고, 허위로 실적증명을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체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88) 경상남도○○과 관련공무원 등 확인 결과 이행능력실적평가를 위한 물품납품 실적 증명은 각 기관에서 확인 후 직인 날인 하여 제출된 서류(○○소방서, ○○소방서, ○○소방본부)를 기본으로 평가함에 따라 각 기관별로 실적증명의 과다 신고 등은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 함